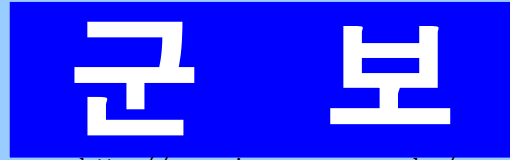


아리야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372호 2015. 10. 21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5-78호 정선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(경미한변경) 1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5-793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
입법예고 4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15-78호

정선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(경미한변경)

1.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-8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「주택법」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,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.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<http://luris.mltm.go.kr>” 에서 열람가능)

2015년 10월 12일

정 선 군 수

1. 변경사유

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

2. 사 업 명 : 고한 삼운아파트 신축공사 (변경없음)

3. 사업주체 (변경없음)

가. 성 명 : (주) 삼운건설 대표이사 이상훈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4안길 32, 201호(방배동)

3. 사업시행지의 위치·면적 또는 건설주택의 규모 (변경)

가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-8번지 외 3필지

나. 대지면적 : (기정)12,068.00㎡→(변경)12,115.00㎡

다. 건축면적 : 2,497.92㎡

라. 연 면 적 : 33,255.22㎡

마. 건축규모 : 공동주택-지상18~19층 5개동, 부대복리시설 1층 1개동

사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4. 사업기간 : 2015년 7월 1일 ~ 2017년 10월 1일(변경없음)

5. 「주택법」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(변경)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14	고한 삼운지구	지구단위계획구역	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-8번지 일원	12,068	증)47	12,115	정선군고시 제2015-43호 (2015.06.16.)	

▷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	변경사유
변경	14	고한 삼운 지구	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-8번지 일원	12,068㎡→12,115㎡ (면적증가 47㎡)	•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

2)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(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제3종일반주거지역	12,068	증)47	12,115	100.0	

(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(해당없음)

(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제3종일반주거지역	12,068	증)47	12,115	100.0	

구분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14	A-1	용도	허용용도 : 주택법 제2조의 공동주택, 부대·복리시설
			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30% 이하
		용적율	270% 이하
		높이	19층 이하
		배치	도면참조

(5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
도면 표시번호	위치	계획내용	비 고
14	A-1	▷주차장에 관한 계획 주차 :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토록 함	-

6. 「주택법」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제 사항

- (1)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- (2)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
- (3)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
7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5-793호

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「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조례」 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0일

정 선 군 수

1. 조례명 :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2. 개정이유
 - 가.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통합하여 규정
 - 나.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문화원의 지역 문화사업 수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 - 다.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회계책임을 부여
3. 주요내용
 - 가.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 범위를 보조금으로 통합하여 규정 (제7조)
 - 나.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(제6조)
 - 다. 회계책임자를 지정·운영 (제8조)
4. 개정 조례안 : 별첨
5. 입법예고 : 2015. 10. 20. ~ 2015. 11. 8. (20일간)
6. 의견제출
 - 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수(참조 : 정선군청 문화관광과,

전화 033-560-2562, FAX 033-560-2593, E-mail : publicljc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붙임 :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 칙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 고
	찬 성	반 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강구하여야”를 “강구해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의 제목 “(사업보조금의 용도)”를 “(보조금의 용도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.

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
2. 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
3.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임차료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

제7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운영보조금의 용도)”를 “(보조금 회계책임자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회계책임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·운영해야 한다.

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검사결과”를 “검사 결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할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준용규정)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군수의 책무)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·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<u>강구</u> 하여야 한다.	제3조(군수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<u>강구</u> 해야 -----.
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①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. ② (생 략)	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①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사업보조금의 용도)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· 보급 · 보존 · 전승 및 선양 2. 향토사의 발굴 · 조사 · 연구 및 사료의 수집 · 보존 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· 보존 및 보급 5.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.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	제7조(보조금의 용도)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. 1.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2. 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3.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임차료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
<u>위한 문화활동</u> 8. <u>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</u> 9. <u>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</u> 제8조(운영보조금의 용도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1. <u>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</u> 2. <u>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</u> 3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</u> 제9조(사무의 검사 · 감독) ① (생략) ②군수는 <u>검사결과</u>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 ③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 제10조(예산의 반영)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 ·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 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①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</u>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.	<삭 제> <삭 제> 제8조(보조금 회계책임자) <u>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· 운영해야 한다.</u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제9조(사무의 검사 ·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검사 결과</u> ----- ----- -----. ③----- <u>없으면</u> ----- ----- - <u>해야</u> -----. 제10조(예산의 반영)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해야</u> ----- -. 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①----- ----- ----- <u>인정할</u> ----- ----- -----.
--	--

② (생 략) <u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	② (현행과 같음) <u>제12조(준용규정)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정선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
---	---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문화원진흥법

제3조(지방문화원의 육성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방문화원 육성·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·프로그램·시설·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
3.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·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 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 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 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 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 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 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 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-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19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6.7., 2012.2.17., 2014.1.21., 2015.5.18.>

1. "문화예술교육"이라 함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,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.

가. 학교문화예술교육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

나. 사회문화예술교육 :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